

정부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제도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발포합성수지 공제조합 인가를 얻어 공제조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생산자들이 자주 물어오는 궁금한 점들을 풀어본다.

Q.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누구인가요?

- A.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받는 의무생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 ② 전자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음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 ③ 농축수산물상자 제조업 및 수입업
 - ④ 음식료품류, 의약품류 등의 제조업 및 수입업
 - ⑤ 농축수산물(자가 브랜드 부착)의 판매업 및 수입업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 및 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Q. 발포합성수지의 2007년 재활용 의무율은 얼마인가요?

A. EPS(스티로폼), 기타 합성수지 단일재질(EPP, EPE, EPU)의 2007년도 재활용 의무율은 69.0%입니다.

Q. 협회 가입의 경우 의무생산자의 부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담금 기준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며 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전완충제		기타 포장재	비고
	역경로회수	일반		
일반분담금	35원/kg	80원/kg	95원/kg	

- 부담금은 재활용 의무량(출고량 x 의무율)에 대하여 기준 비용을 적용하며 가입년도에는 일반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기본분담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가입비, 년회비 등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 그 동안 125원/kg의 기준 비용이 적용되던 수산물상자에 대하여 의무생산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는 기타 포장재와 같이 95원/kg을 적용합니다.

Q. 재활용 부담금은 언제 납부하면 되나요?

- A. 4월 중 업체별로 공문으로 통보 예정인 부담금은 부담금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납도 가능합니다.
- 기본분담금: 년 1회(5월)
 - 재활용 부담금 500만원 미만: 년 1회(5월)
 - 재활용 부담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년 2회(5월, 7월)
 - 재활용 부담금 1,000만원 이상: 년 4회(5월, 7월, 9월, 11월)
 - 납부 기한: 5월 10일, 7월 10일, 9월 10일, 11월 10일
 - * 납부 기한이 은행 휴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
 - 재활용 부담금 미납 시 제제조치납부 독촉후 가산금 부과 체납 1개월이상 지연시 이사회 결의로 제명 및 참여약정 파기 및 관련기관에 통보(해당 회원사,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 재활용 부담금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19-224207 (예금주: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농협중앙회: 083-01-324173 (예금주: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국민은행: 387601-04-002454 (예금주: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Q. 만약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의무 이행을 못하는 경우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의무생산자가 의무 이행을 못하는 경우 최대 재활용 기준비용의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환경부로부터 부과됩니다. 금년도 발포합성수지 단일재질 포장재의 재활용 기준비용은 kg당 317원입니다.